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11월 06일

다산동장 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유**	유** 1972-04-19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9-11-06
유**	이** 1976-08-29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9-11-06
유**	유** 2000-04-26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9-11-06